

감리지적 사례 FSS/2008-34 :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0.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종속회사 B사는 ’10년 기 발행한 일반콘도회원권을 우선주 회원권으로 전환발행하면서 청약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사용기한 만료시 원하는 경우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관련 주석사항을 누락하였으며, 회사는 ’11년~’1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B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시설이용권이 부여되어있어 우선주 발행금액에서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분리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우선주회원권을 전액 자본으로 계상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또한, 회사의 종속회사 C사는 ’10년~’13년 재고자산 수불수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회사는 C사의 왜곡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 B사가 발행한 우선주 회원권 발행금액 중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종속회사 C사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10년~’1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10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B사가 발생한 우선주 회원권 반환 약정에 관련 주석기재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公正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舊 회계감사기준 600(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의 감사목적에 적절한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연결감사시 종속회사 B사의 우선주에 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우선주 회원권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하여 동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와 종속회사 C사의 감사인 및 담당이사가 동일함에도 C사의 재고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공품, 반제품, 저장품 등에 대해 실사입회 하지 못하였음에도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가 자본이 과대계상된 C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왜곡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오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